

# 濟州島 祭祀分割의 事例研究\*

李 昌 基\*\*

〈목

차〉

- |                           |                         |
|---------------------------|-------------------------|
| 一. 濟州島의 祭祀慣行              | 2. 長男奉祀의 혼적이 엿보이는<br>事例 |
| 二. 濟州島의 祭祀分割에 관한<br>既存 研究 | 3. 長男奉祀家門의 祭祀分割         |
| 三. 祭祀分割의 事例들              | 4. 濟州島 祭祀分割의 特徵         |
| 1. 歷史가 오래된 祭祀分割의 사례       |                         |

## 一. 濟州島의 祭祀慣行

제주도의 가족제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약화, 外家나 妻家親族과의 긴밀한 유대, 상대적으로 높은 부녀자의 지위,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 약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의 미약 등은 父系의 家系繼承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 가족과 매우 다른 모습들이다.

그러나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은 육지의 전통가족 못지 않게 매우 강하다. 열악한 삶의 조건과 궁핍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출생의례나 혼인의례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당을 찾아 조상을 안장하고 후히 제사지내고자 하는 제주인의 의지는 지극한 것이었다. 봉사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외손봉사〉나 〈까마귀 모른 식개<sup>1)</sup>를 통해서라도 제사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상제사의 종류는 육지의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忼祭, 茶禮, 墓祭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제사의 의례절차도 四禮便覽에 허아 행하기 때문에 육지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집에서 지내는 忼祭와 茶禮時에 祖上祭祀에

\* 이 논문은 199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조성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임.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1) 미혼사망자에 대한 제사나 외손봉사와 같이 정식으로 모설 수 없는 제사를 납모르게 간단히 지내는 것을 이르는 제주도 말이다.

앞서 床房(마룻방)의 문틀 위에 좌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념되는 門神에게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 것이 특이한 모습이다. 이것을 제주도에서는 門祭라 한다(玄容駿: 1973, 崔在錫: 1978).

제사를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통사회와 제주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장남이나 종손이 제사를 전담하지 아니하고 여러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봉행하는 祭祀分割의 관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제사분짓<sup>2)</sup>〉이라 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제사는 주로 忌祭祀이지만 차례까지도 분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四代奉祀의 원칙에 충실하여 高祖父母까지 忌祭祀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주도에서는 기제사나 명절차례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 四代奉祀에 충실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三代奉祀나 兩代奉祀에 그치는 집안도 많다. 世代의 산정방법도 집안에 따라 달라서 종손을 기준으로 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직계자손 중 최고항렬자를 기준으로 하는 집안도 있다. 종손이 제사를 전담하면서 최고항렬자를 기준으로 세대를 계산하게 되면 6~7代 조상까지 종손이 기제사를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崔在錫: 1978), 종손만을 기준으로 세대를 산정하게 되면 친손자가 생존해 있는데도 止祭<sup>3)</sup>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사권이 종손에게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대산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紙榜을 작성하며, 初獻은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을 찾기가 힘들다. 종손을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고, 봉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고항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안마다 각기 상이하여 家家禮에 따를 수 밖에 없다. 紙榜 작성시 批位의 貫鄉을 밝히지 않는 집안이 매우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忌祭祀를 止祭하게 되면 墓祭를 봉행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기제사를 지체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묘제를 봉행하는 것은

2) ‘분짓’은 한자어 ‘分衿’에서 나온 제주도 방언으로서 ‘分(나눌 分)’은 音讀하고, ‘衿(웃깃 금)’은 訓讀하여 ‘분깃’이 되고, ‘깃’이 다시 구개음화하여 ‘깃’으로 발음이 전화된 것이다(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太學社, 1985, p. 464). 分衿은 오늘날 상속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조선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던 용어였다(崔在錫: 1972).

3) 止祭란 기제사 봉행을 종료하고 묘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아니다. 묘제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 매우 많다. 특히 祭越田<sup>4)</sup>이 없는 경우에 묘제를 생략하는 집안이 많이 나타난다. 묘제를 봉행하는 경우에도 제주도에서는 음력 3월에 행하는 점이 음력 10월 중에 행하는 육지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捄墳(伐草)을 거르는 일은 없다. 음력 팔월 초에 행하는 소분에는 직계자손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고, 조상 묘소의 소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간주한다. 직장에서도 소분을 위한 하루의 휴가가 양해되며, 중고등학교도 하루쯤 휴업을 하는 정도이다.

## 二. 濟州島의 祭祀分割에 관한 既存 研究

제주도에 제사분할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1973년 玄容駿의 보고에 의해서 최초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의 분가와 상속제도를 설명하면서 사례 제시없이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승조제도 아들 모두에게 분배된다(1973. p. 80)”고만 간단하게 언급하여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분할이 존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의 조사 대상지역이 제주시 오라3동과 노형동 광평부락인 것으로 미루어 이들 지역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제주도의 제사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된 것은 1973년 佐藤信行에 의해서이다. 그는 제주도의 가족을 다루는 논문에서 제주시 오라3동의 延州玄氏 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분할의 사례를 家系圖와 함께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이 보고는 한 당내집단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제주도의 제사분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1973. pp. 135~136).

玄容駿은 1977년에 제주도의 育祭를 다른 한 논문에서 제주시 노형동 延州玄氏 가문의 제사분배 양상을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기제사와 차례의 분배 및 분배된 제사의 이양과정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제사분합과 재산상속의 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도의 제사분합 논의를 한결음 진전시켰다(1977. pp. 262~265).

竹田 旦은 제주도의 제사분합과 진도의 제사분합을 함께 다루면서 상호 비교를

---

4) 祭越田이란 조상제사와 묘소관리를 위한 位土를 말한다. 제주도 동부지방에서는 이것을 捄墳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도하여 제사분할의 논의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제사분할의 국제적 비교에까지 관심을 가져 제주도의 제사분할을 分住隱居에 바탕을 둔 일본의 分牌祭祀와 대응시킴으로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1984. pp. 38~55).

한편 필자도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제사분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李昌基:1991. pp. 295~313).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사분합이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에서 제주시와 애월, 한림을 거쳐 모슬포에 이르는 섬의 서·북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밝히고, 제사의 분합과 계승형태, 재산상속과 제사분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제주도의 제사분합이 조선 중기 이전의 輪回奉祀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가문의 分財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큰 수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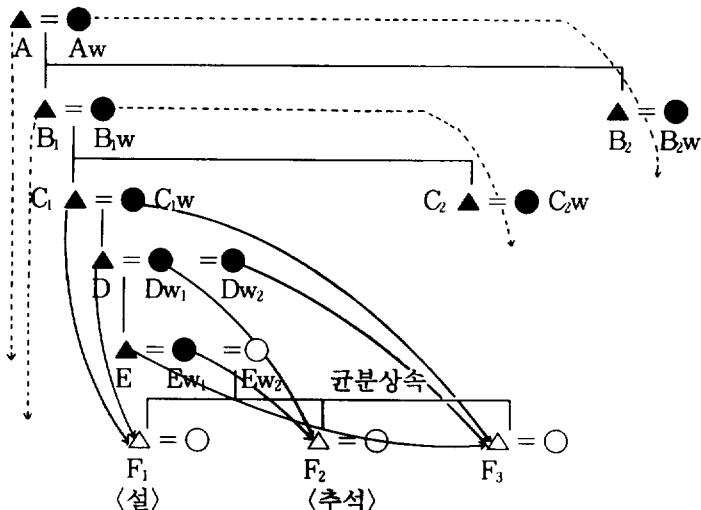
그러나 지면의 제한으로 제사분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서 제주도의 제사분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필자의 논문에 앞서 발표된 여러 학자들의 사례보고는 佐藤信行(1973) 1사례, 玄容駿(1977) 1사례, 竹田 旦(1984) 5사례 등 7건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의 제사분합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지만 조사대상지역이 제주시 인근의 3개 마을(오라3동, 노형동 광평부락, 노형동 월랑부락)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문중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도 전체의 제사분합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문중의 다양한 제사분합 사례들을 소개하여 앞서 소개된 여러 학자들의 사례보고들과 함께 향후 제주도 친족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을 위한 자료수집은 1987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와 한림읍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과 보완을 거듭하였다. 가장 최근의 현지조사는 199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해졌다.

### 三. 祭祀分割의 事例들

#### 1. 歷史가 오래된 祭祀分割의 사례

## 〈사례 1〉



〈사례1 : 한림읍 대림리 선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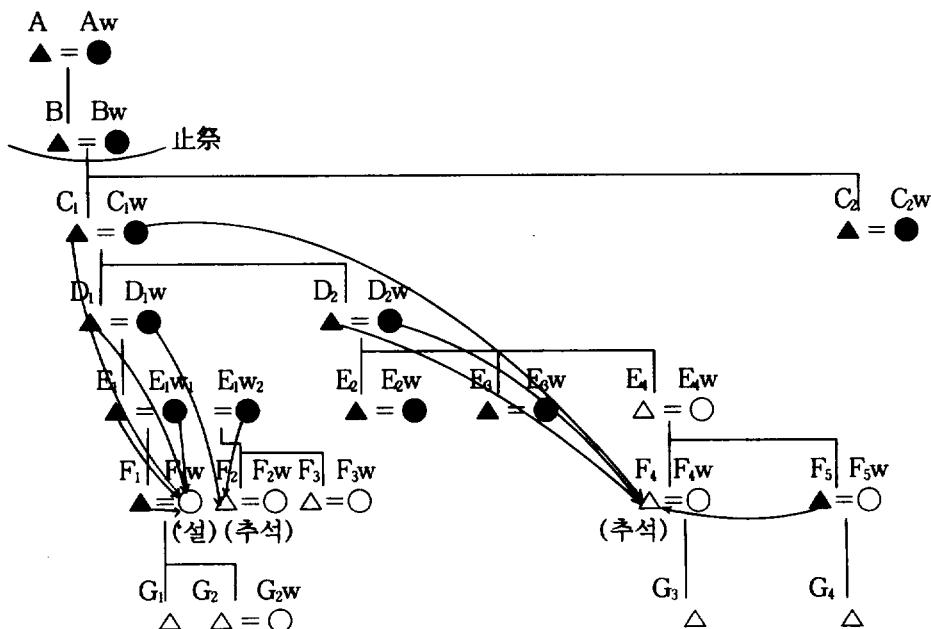
〈사례 1〉은 5代 宗孫인  $F_1$  三兄弟間의 祭祀分割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F_1$ 의 5代祖와 高祖父 內外의 祭祀를 분할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분할의 전통이 매우 오래된 집안으로 짐작된다. 즉  $F_1$ 의 5代祖인 A內外의 제사는 분할되어 A의 제사는 長孫인  $B_1$ 의 자손들이 계승하고, Aw의 제사는 支孫인  $B_2$ 의 자손들이 계승하였다가 止祭하였다.  $B_1$ 의 제사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할되어  $B_1$ 의 제사는 宗孫인  $C_1$ 의 자손들이 봉행하고,  $B_{1w}$ 의 제사는 支孫인  $C_2$ 의 자손들이 봉행하다가 지제하였다.  $B_2$ 와  $C_2$ 자손들의 제사분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지제된 A內외와  $B_1$ 內外의 묘제는 田 約 600坪을 마련하여 문중에서 거행하고 있었다.

$F_1$  삼형제의 제사분할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재산을 균분상속하고 조상의 제사도 공평하게 나누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長男인  $F_1$ 은 曾祖父  $C_1$ 과 祖父 D의 기제사와 설명절의 차례를 담당하고, 次男인  $F_2$ 는 祖母( $Dw_1$ )와 母( $Ew_1$ )의 기제사와 추식 차례를 담당한다. 三男인  $F_3$ 는 명절 차례를 담당하지 않는 대신 曾祖母  $C_1w$ 와 祖母  $Dw_2$  및 父 E의 三位의 기제사를 담당하여 삼형제간에 제사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生母인  $Ew_2$ 가 사망하게 되면 父 E의 제사는 長男인  $F_1$

이 이양받고,  $E_{w2}$ 의 제사는 三男  $F_3$ 가 맡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제주도에서는 기제사 뿐만 아니라 명절의 차례도 분할한다. 강원도 삼척군 新里(呂重哲: 1980)에서는 기제사의 분할만 다루고 있어서 차례의 분할여부를 알 수 없지만, 전남 진도에서는 기제사를 분할하더라도 명절의 차례는 분할하지 아니하고 장남(종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伊藤亞人: 1973, 全京秀: 1977, 竹田 旦: 1984).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조상부부를 하나의 奉祀單位로 하여 명절별로 奉祀者를 배정함으로서 몇몇 자손들이 차례를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래된 집안에서 더욱 그러하다(李昌基: 1991).

### 〈사례 2〉



〈사례 2: 애월읍 곽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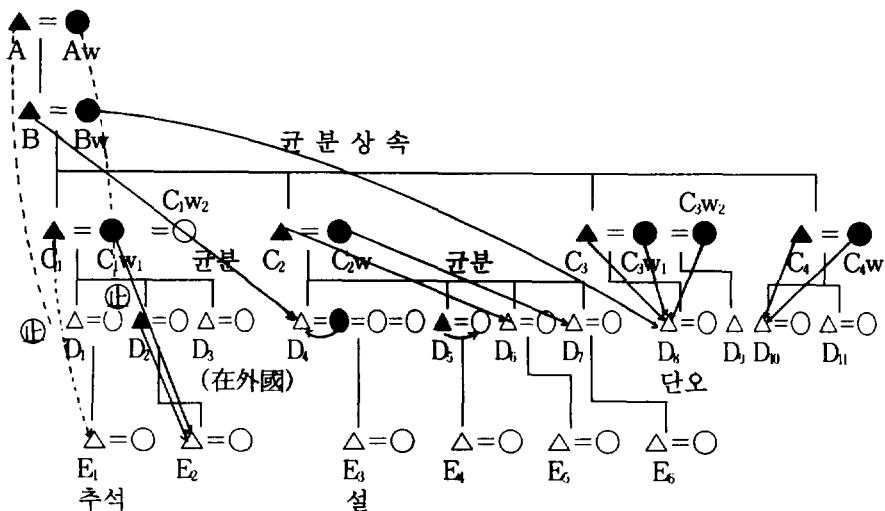
〈사례 2〉는 비교적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랜 집안이다. A내외와 B내외의 제사는 이미 止祭되어 정확한 분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C_1$ 은 자손이 설차례를,  $C_2$ 의 자손이 추석차례를 봉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미 C형제들 사이에서 제사가 분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B내외가 1886년 같은 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적어도 1900년 이전부터 제사를 분할해 왔음이 확실하다.

이후 이 집안에서는 재산을 균분상속하고 제사도 형제들 간에 분할하는 전통을 지속해 왔다. C<sub>2</sub>자손들의 제사분할 상황은 〈사례 3〉에서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C<sub>1</sub>자손들의 제사분할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考位의 제사는 長男이, 姉位의 제사는 次男이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F<sub>1</sub>과 F<sub>2</sub>형제는 生母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모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F<sub>1</sub>이 사망한 후에는 그가 담당하고 있던 제사를 부인 F<sub>1</sub>w가 맡아 지내고 있다. 아들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D<sub>2</sub>는 아들이 삼형제이지만 장남과 차남이 모두 기독교 신자로서 제사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삼남인 E<sub>4</sub>가 부모 양위와 부친이 모시던 조모의 제사를 모두 봉행하다가 연로하여 현재는 아들 F<sub>4</sub>가 모두 이양하였다. E<sub>4</sub>의 차남 F<sub>5</sub>는 일찍 사망하고 F<sub>5</sub>w마저 개가하여 F<sub>4</sub>와 F<sub>5</sub> 형제 사이에는 제사가 분할되지 못하였다.

명절 차례의 분할 상황을 살펴보면 C<sub>1</sub>부부와 D<sub>1</sub>부부, E<sub>1</sub>부부의 설 차례는 宗婦 F<sub>1</sub>w가 담당하고, C<sub>1</sub>부부의 추석차례는 F<sub>2</sub>가, D<sub>1</sub>부부와 E<sub>1</sub>부부의 추석 차례는 F<sub>2</sub>가 담당한다.

이 집안에서는 재산을 균분상속하고 제사도 고루 분할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월 전을 운용하지는 않는다. 제사 대상자의 범위도 일제시대부터 曾祖까지 3代만 봉사하고 있으며, 묘제와 단오제사도 일제시대 이후 생략하여 지내지 않는다.

### 〈사례 3〉



〈사례 3 : 애월읍 곽지리〉

〈사례 3〉은 〈사례 2〉의 C<sub>2</sub>자손으로 이루어진 집안이다(〈사례 3〉의 A는 〈사례 2〉의 C<sub>2</sub>와 동일하다). A가 차남인데도 그 자손들이 추석 차례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A세대 이전부터 제사를 분할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집안도 역시 〈사례 2〉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균분상속하고, 제사를 고르게 분할하며, 제월전은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 일제시대 이후 삼대봉사를 지켜오고 있으며 묘제도 생략하여 지내지 않는다.

이 집안의 C항렬의 제사분담 상황을 보면 장남인 C<sub>1</sub>이 조부모 A부부의 제사를 맡고, 차남인 C<sub>2</sub>가 父 B의 제사를, 삼남인 C<sub>3</sub>가 母 Bw의 제사를 봉행하였다. 그리고 명절의 차례도 나누어서 장남이 추석을, 차남이 설을, 삼남이 단오를 담당하였다. 장남이 추석을 담당하게 된 것은 A세대에서 제사를 분할할 때 차남인 A의 후손들이 추석을 담당했었고, 제사집단을 분리한 이후에도 그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사남 C<sub>4</sub>가 전혀 제사를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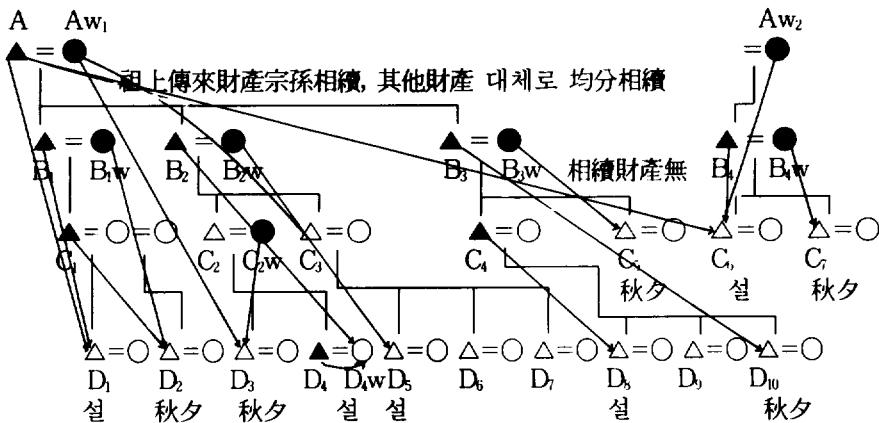
이렇게 분배된 제사는 그 아들들에게 다시 분할 계승되어 D<sub>1</sub>은 A와 C<sub>1</sub>의 제사 를, D<sub>2</sub>는 Aw와 C<sub>1</sub>w의 제사를 담당하였다. D<sub>3</sub>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제사를 분할 받지 못하였다. D<sub>2</sub>가 사망하고 D<sub>1</sub>의 나이가 70세를 넘자 A부부의 제사는 止祭하고 C<sub>1</sub>부부의 제사는 E<sub>1</sub>과 E<sub>2</sub>에게로 이양되었다. C<sub>2</sub>부부와 C<sub>3</sub>가 담당하던 B의 제사는 C<sub>2</sub>의 아들 3형제가 분할하여 B의 제사는 장남 D<sub>4</sub>가, C<sub>2</sub>의 제사는 3남 D<sub>6</sub>가, C<sub>2</sub>w의 제사는 4남 D<sub>7</sub>이 담당하였다. 차남 D<sub>5</sub>는 일찍 사망하여 제사를 분배받지 못하였다. C<sub>3</sub>부부와 C<sub>3</sub>가 담당하던 Bw의 제사는 D<sub>8</sub>이 모두 물려받았다.

C<sub>1</sub>, C<sub>2</sub>, C<sub>3</sub> 3형제가 분할했던 차례도 그들의 장남제로 계승되어서 현재 B부부의 추석차례는 E<sub>1</sub>이 담당하고, 설 차례는 D<sub>4</sub>가 담당하고 있다. C<sub>3</sub>가 봉행하던 단오의 차례는 일제시대에 폐지하였다. C<sub>1</sub>부부와 C<sub>2</sub>부부의 차례도 분할되어서 C<sub>1</sub>의 추석 차례는 E<sub>1</sub>, 설 차례는 E<sub>2</sub>가 맡고 있고, C<sub>2</sub>부부의 설 차례는 D<sub>6</sub>, 추석 차례는 D<sub>7</sub>가 맡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도에서는 기제사뿐만 아니라 명절의 차례까지도 자손들이 나누어 맡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사례 4〉는 제사분할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집안으로서 기제사와 차례의 분할

뿐만 아니라 ‘돌림제사<sup>5)</sup>까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sup>6)</sup>

#### 〈사례 4〉



〈사례 4 : 한림읍 대림리 선돌마을〉

이 집안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예를 들면 임야, 전래 가옥, 일부 토지등)은 장남에게 상속시키고 자신이 일군 재산은 차남 이하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있다. 차남 이하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장남이 물려받는 조상전래 재산을 감안하기 때문에 장남이 약간 많게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로 균분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sub>4</sub>와 C<sub>5</sub> 형제는 B<sub>3</sub>가 상속재산을 향전하여 거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재산상속의 관행을 지니고 있으면서 제사는 철저하게 분할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D<sub>1</sub>은 조부 B<sub>1</sub>의 기제사를 봉행하면서, 중조부 A의 기제사를 당숙 C<sub>6</sub>과 1년씩 교대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A부부 3位와 B<sub>1</sub>부부 및 선친 C<sub>1</sub>의 설 차례를 담당한다. D<sub>1</sub>의 동생인 D<sub>2</sub>는 父(C<sub>1</sub>)와 조모(B<sub>1</sub>w)의 기제사를 모시면서 B<sub>1</sub>부부와 C<sub>1</sub>의 추석 차

5) ‘돌림제사’란 조상제사를 분할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하기 어렵거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고르게 분배하고도 남는 제사가 있을 때 몇몇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교대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李昌基: 1991). 이러한 돌림제사의 사례는 玄容駿의 보고(1977)에서도 1 건, 竹田 旦의 보고(1984)에서도 3건이 보고된 바 있으며, 필자의 조사에서도 〈사례 4〉와 〈사례 10〉 〈사례 1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강원도 신리나 전남 진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 조선중기까지 양반 사대부가에서 널리 행해졌던 ‘輪回奉祀’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날 제주도에 ‘돌림제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李昌基: 1991).

6) 이 사례는 필자의 논문(1991)에 이미 소개된 것이지만 그 후 발생한 약간의 변화와 함께 이 자리에 轉載한다.

례를 맡고 있다.

$D_3$ 는 모친  $C_2w$ 의 기제사를 모시면서 중조모  $Aw_1$ 의 기제사를 사촌인  $D_5$ 와 1년씩 교대로 봉행한다. 그리고 A부부 3位와 B<sub>2</sub>부부 및 모친  $C_2w$ 의 추석차례를 담당한다.  $D_3$ 의 동생인  $D_4$ 는 父가 모시던 조부  $B_2$ 의 기제사를 물려 받았으나 그가 사망한 후 그의 부인( $D_4w$ )이 시조부와 남편의 기제사를 맡아 하면서 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례를 담당한다.  $D_5$ 는 중조모  $Aw_1$ 의 기제사를 사촌인  $D_3$ 와 1년씩 교대로 모시면서, 조모  $B_2w$ 의 기제사도 맡고 있다. 설에는  $B_2$ 부부의 차례를 모신다.  $D_5$ 가 모시는 제사는 원래 父가 분배받아 모시던 것인데 연로하여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D_6$ 는 父( $C_1$ )의 기제사를 담당하면서  $B_3$ 부부와  $C_4$ 의 설 차례를 맡고 있다.  $D_6$ 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C_4$ 의 기제사는 원래  $D_6$ 이 장남을 대신하여 맡고 있었지만,  $D_6$ 이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워져  $D_6$ 가 이양받았다.  $D_{10}$ 은 父가 모시던 조부  $B_3$ 의 기제사를 물려받고, 추석에 父의 차례를 모신다.  $D_6$ 의 숙부인  $C_5$ 는 母  $B_3w$ 의 기제사를 맡으면서  $B_3$ 부부의 추석 차례를 담당한다.

$C_6$ 는 조부A의 기제사를 종손인  $D_1$ 과 1년씩 교대로 모시면서 父( $B_4$ )와 조모( $Aw_2$ : 父의 生母)의 기제사를 담당하고, 母( $B_4w$ )의 기제사는 동생  $C_7$ 에게 분할해 주었다.  $B_4$ 부부의 차례는  $C_6$ 가 설을,  $C_7$ 이 추석을 담당하여 나누어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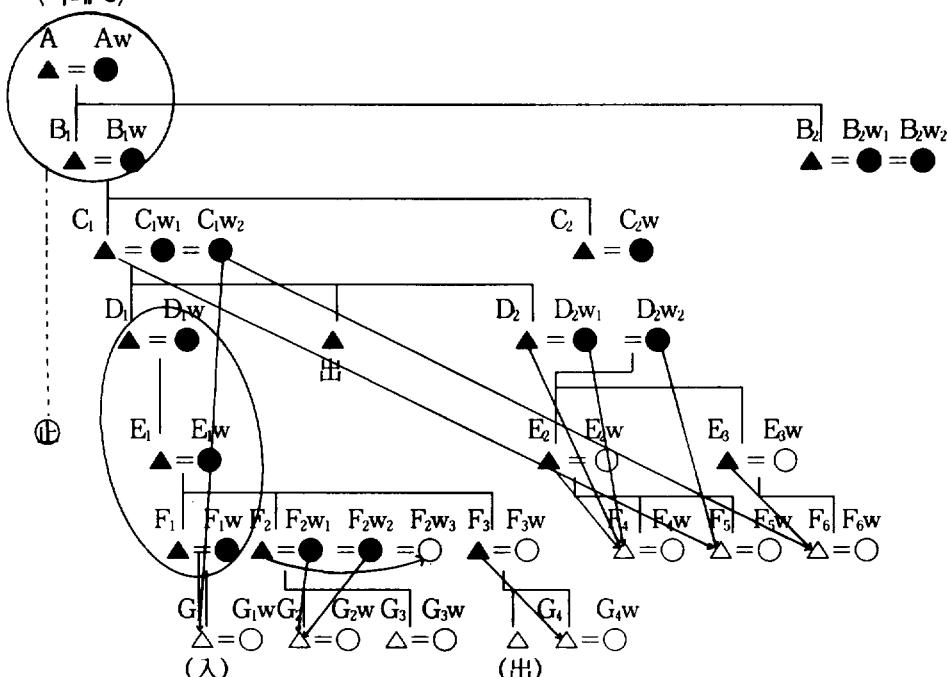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1987년의 일차조사 이후 제사분담 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1992년 확인조사에 의하면  $C_3$ 내외가 사망한 후 아들 삼형제( $D_5$ ,  $D_6$ ,  $D_7$ )사이에 제사를 다시 분할하였다. 장남  $D_5$ 는 부모 양위의 기제사와 부모, 조부모의 설 차례를 담당하고,  $D_5$ 와 일년씩 교대로 모시던 중조모( $Aw_1$ )의 기제사는  $D_6$ 에게, 그리고 조모( $B_2w$ )의 기제사는  $D_7$ 에게 이양하였다.  $C_3$ 내외의 추석 차례는  $D_6$ 가 맡았다. 그리고  $D_1$ 의 생모가 사망한 후  $D_2$ 가 맡고 있던 제사를 모두  $D_1$ 에게로 이양하였다. 그 이유는  $D_2$ 가 기독교 신자로서 전통적인 의례에 맞춰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D_1$ 이 자청해서 제사를 모셔오게 된 것이다.<sup>7)</sup> 이와같이 제주도에서는 일단 분할된 제사도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다시 분할하게 된다. 제사의 재분할에 의해 방계친 사이에 제사권이 이양되는 사례는 형제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방계친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제사권이 특정한 자손에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

7) 특정 외래종교와 조상제사의례 사이의 마찰 현상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봉사손이 일본에 거류하여 島內와 일본에서 이중으로 제사지내는 사례도 혼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외형상 제사분할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하고 상황에 따라 봉사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조상제사는 매우 유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李昌基: 1991).

## 2. 長男奉祀의 흔적이 엿보이는 事例

〈사례 5〉



〈사례 5: 애월읍 상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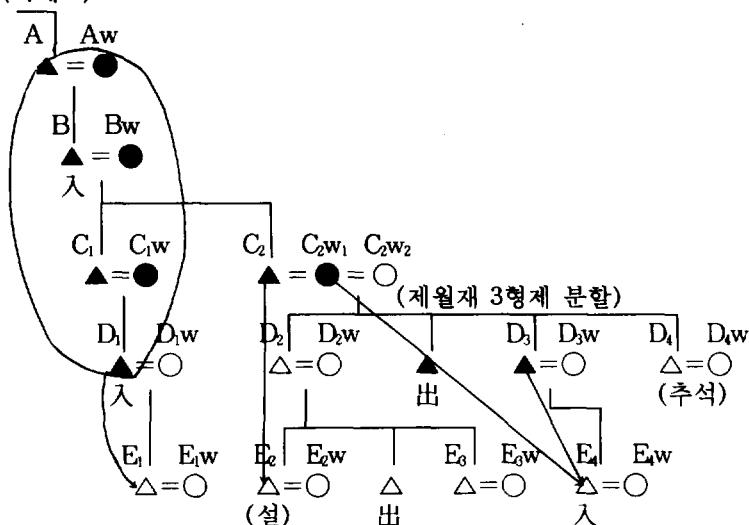
〈사례 5〉는 장남봉사의 전통이 엿보이는 집안으로서 장남봉사와 제사분할이 공존하고 있는 사례이다. A내외와 B<sub>1</sub>내외의 제사는 제월전과 함께 종손이 계승하여 봉행하다가 4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기제사를 지제하고 현재는 묘제만 거행하고 있다. 이들의 묘제는 별도로 마련된 제월전을 가지고 종손이 전담해서 차린다. A와 B<sub>1</sub>에게는 차남이 있었음에도 종손에게로 제사가 계승된 것으로 보아 장남봉사의 전통이 강하게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는 C<sub>1</sub>내외가 사망한 이후 제사분할의 관행을 도입하고 있다. C<sub>1</sub>내외가 사망한 후 C<sub>1</sub>이 봉행하던 윗대 조상 4위의 제사와 C<sub>1w1</sub>의 제사는 장남인 D<sub>1</sub>이 물려받고, C<sub>1</sub>과 C<sub>1w1</sub>의 제사는

$D_2$ 가 담당하여 형제간에 제사를 분할하였다.  $C_1$ 내외 3位의 제사를  $D_1$ 과  $D_2$ 가 분할하게 된 것은 조상 전래의 제월전 이외에 물려줄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윗대 조상의 제사를 위한 제월전은 종손이 상속하였지만 자신( $C_1$ 부부)의 제사를 위한 제월전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여 장남에게 제사를 전담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부담이 많은 장남  $D_1$ 이  $C_1w_2$ 의 제사를 담당하고,  $D_2$ 가  $C_1$ 과  $C_1w_1$ 의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D_1$ 의 자손들은 제월전과 제사의 장남상속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나  $D_2$ 는 아들 형제에게 재산을 균분상속시키고 제사도 분할하여 현재  $D_2$ 의 손자인  $F_4$ 가 조부 모인  $D_2$ 와  $D_2w_1$  및 부친  $E_2$ 의 제사를 담당하고,  $F_5$ 가 중조부  $C_1$ 과 조모  $D_2w_2$ 의 제사를,  $F_6$ 가 증조모  $C_1w_1$ 과 부친  $E_3$ 의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이 집안에서는 祭越財를 종손에게 상속시키고 제사도 장남이 전담하는데 반해, 재산을 균분상속한  $D_2$ 의 자손들은 명절의 茶禮도 종손이 전담하는데 반해, 재산을 균분상속한  $D_2$ 의 자손들은 명절의 차례도 분할하여  $F_4$ 가 설 차례를,  $F_5$ 가 추석 차례를 담당하고 있다.

#### 〈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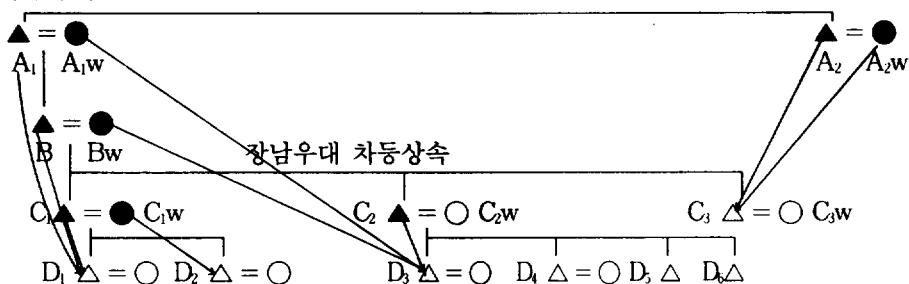


〈사례 6 : 애월읍 상가리〉

〈사례 6〉은 〈사례 5〉에서 분가한 집안으로 A는 〈사례 5〉의  $C_2$ 와 동일 인물이다. 이 집안에서도 A내외와 B내외의 제사가  $C_1$ 과  $D_1$ 을 거쳐  $E_1$ 에 이르기까지 종손으

로 계승된 것으로 보아 장남봉사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_2$ 내외가 사망한 후 제월재를 삼형제가 분할하고 제사도 나누어 지내게 되었다. 현재  $C_2$ 의 제사는 장남  $D_2$ 를 거쳐 장손자인  $E_2$ 가 모시고 있고,  $C_2w_1$ 의 제사는  $D_3$ 를 거쳐  $E_4$ 가 담당하고 있다. 명절의 차례는  $E_2$ (설)와  $D_4$ (추석)가 나누어 맡고 있다.  $D_4$ 는 생모인  $C_2w_2$ 와 동거하고 있어서  $C_2w_2$ 가 사망하면 그의 기제사를 모실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 집안에서는 장남봉사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C_2$ 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기제사와 명절의 차례를 균등하게 분할하고 있다.  $C_2$ 의 생존연대(1891~1930)로 미루어 근대에 와서 제사를 분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사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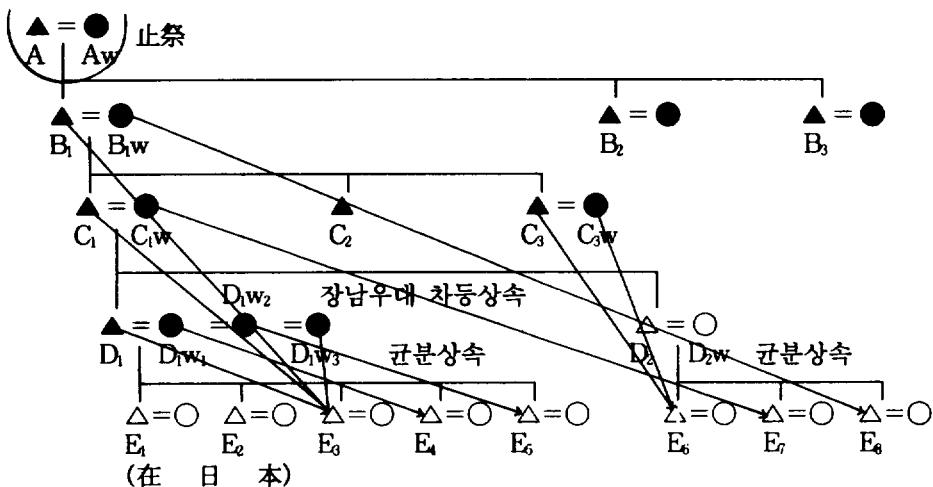


〈사례 7 : 제주시 삼양동〉

〈사례 7〉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제사분할의 모습으로서  $C_1$ ,  $C_2$ ,  $C_3$ 의 3형제간에 부모 및 조부모 형제의 제사를 분할한 경우이다. 장남인  $C_1$ 은 부(B)와 조부(A<sub>1</sub>)의 제사를, 차남인  $C_2$ 는 조모(A<sub>1</sub>w)와 모(Bw)의 제사를 모시고, 삼남인  $C_3$ 은 자손이 없는 종조부모(A<sub>2</sub>, A<sub>2</sub>w)의 제사를 맡아서 각각 2위씩 균등하게 제사를 분담하고 있다. 삼남( $C_3$ )이 종조부모의 제사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부모나 조부모의 제사 중 어느 하나를 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C_1$ 과  $C_2$ 가 사망하자 이들의 제사와 이들이 모시던 제사는 모두 이들의 장남인  $D_1$ 과  $D_2$ 에게 각각 이양되었고  $C_1w$ 의 제사만  $C_1$ 의 차남인  $D_2$ 가 맡게 되었다.  $C_1$ 의 아들 형제와  $C_2$ 의 아들 4형제 사이에는 아직 균등한 제사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동생들이 이제 갓 결혼했거나 아직 미혼인 상태로 어리기 때문이다. 동생들이 성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면 앞으로 장남( $D_1$ ,  $D_2$ )이 맡고 있는 제사중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7〉의  $C_1$ ,  $C_2$ ,  $C_3$  삼형제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상속

을 받았음에도 제사는 균등하게 분할한 경우이다.

〈사례 8〉



〈사례 8 : 한림읍 한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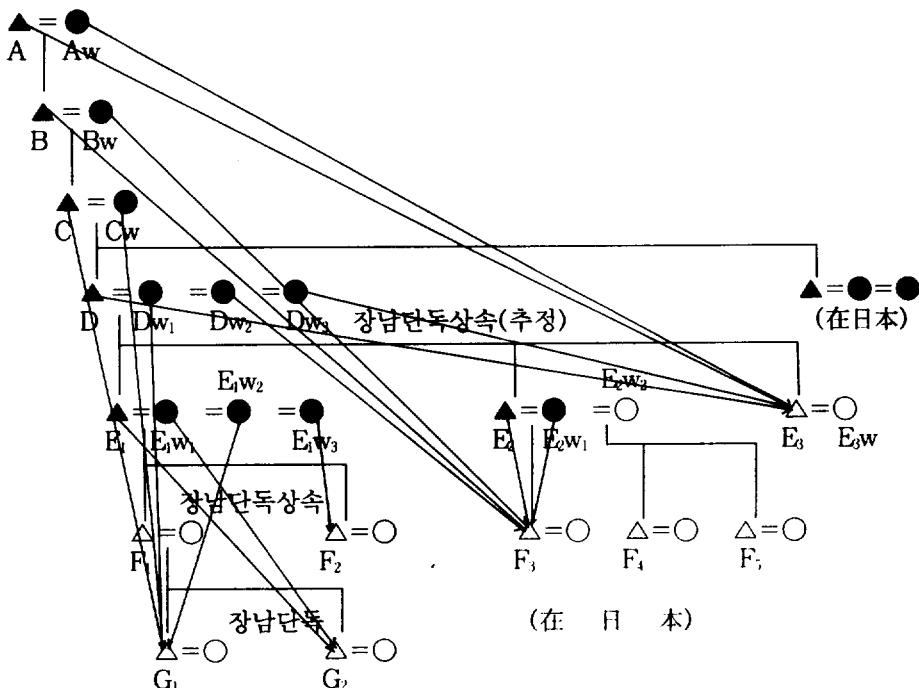
〈사례 8〉은 長男奉祀의 경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면서 제사를 분할한 사례이다. A내외의 제사는 B형제들 사이에서 분할되지 않고 長男인 B<sub>1</sub>과 長孫인 C<sub>1</sub>에게로 이양되었다가 D형제에 와서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D형제는 재산을 장남이 더 많이 상속하였지만 제사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장남인 D<sub>1</sub>은 A와 B<sub>1</sub>, C<sub>1</sub>의 제사를 담당하고 차남인 D<sub>2</sub>는 Aw와 B<sub>1</sub>w, C<sub>1</sub>w의 제사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D<sub>1</sub>이 윗대 조상의 묘사와 명절제사를 담당하는 대신 D<sub>2</sub>는 아들이 없는 C<sub>3</sub>의 재산이 일부를 물려받고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D<sub>1</sub>과 D<sub>2</sub>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균등상속시키고 그들이 모시던 제사도 아들들에게 분할해 주었다. A내외의 제사는 3代奉祀의 원칙에 의해 이때 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D<sub>1</sub>의 아들들과 D<sub>2</sub>의 아들들이 제사를 계승하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D<sub>1</sub>의 아들 5형제는 재산을 균분상속하였음에도 E<sub>1</sub>과 E<sub>2</sub>가 日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손의 위치에 있는 E<sub>3</sub>가 B<sub>1</sub>, C<sub>1</sub>, D<sub>1</sub>, D<sub>1</sub>w<sub>3</sub>의 4위의 제사를 담당하고, E<sub>4</sub>와 E<sub>6</sub>는 각각 D<sub>1</sub>w<sub>1</sub>, D<sub>1</sub>w<sub>2</sub>의 제사만 맡아 행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E<sub>3</sub>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한편 D<sub>2</sub>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균분상속시키고 제사도 고르게 배분하여 장남인 E<sub>6</sub>

는 종조부 C<sub>3</sub>내외의 제사를 모시게 하고, 차남 E<sub>1</sub>은 조모 C<sub>1</sub>w의 제사를, 3남인 E<sub>3</sub>은 중조모 B<sub>1</sub>w의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 3. 長男奉祀家門의 祭祀分割

〈사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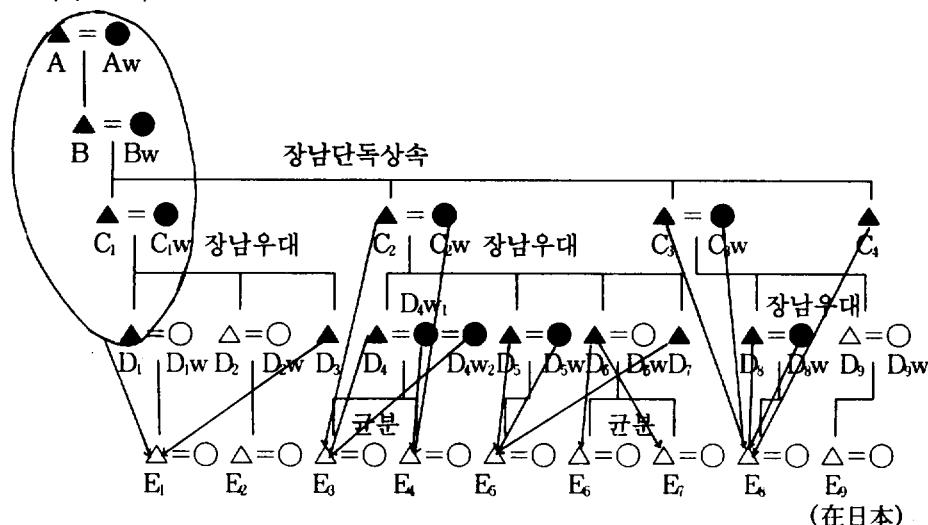


〈사례 9: 조천읍 조천리〉

〈사례 9〉는 오랫동안 장남 단독상속의 원칙을 지켜오면서 제사도 장남이 단독으로 봉사하다가 극히 최근(1985년)에 와서 제사를 분할한 사례이다. 이 집안의 F<sub>1</sub>, F<sub>2</sub>형제와 G<sub>1</sub>, G<sub>2</sub>형제 사이의 재산상속은 장남이 거의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sub>2</sub>의 기억에 의하면 E<sub>1</sub>, E<sub>2</sub>, E<sub>3</sub> 3형제 사이에서도 재산은 장남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짐작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직계조상의 제사도 종손인 F<sub>1</sub>이 전담하였다. 그러다가 1985년에 와서 연로한 F<sub>1</sub>의 제사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하여 F<sub>1</sub>의 5대조인 A내외와 조부 D 및 조모 Dw<sub>1</sub>등 4위의 제사를 숙부인 E<sub>1</sub>에게 이양하고, 고조부인 B내외와 조모 Dw<sub>2</sub>등 3위의 제사를 從弟인 F<sub>3</sub>에게 이양하였다. 장남인 G<sub>1</sub>에게는 G<sub>1</sub>의 고조부모

(C, C<sub>w</sub>)와 증조모(D<sub>w1</sub>) 및 조모(E<sub>w2</sub>)의 4位의 제사를, 차남인 G<sub>2</sub>에게는 조부 E<sub>1</sub>과 조모 E<sub>w1</sub>의 제사를, 동생 F<sub>2</sub>에게는庶母인 E<sub>w3</sub>의 제사를 각각 분할하여 이양하였다. 이 집안의 제사는 F<sub>1</sub>이 아들 세대에 제사를 이양하면서 종손의 4대가 넘는 조상의 제사를支孫에게祭遷<sup>8)</sup>하는 형식과 제주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제사분할의 형식을 복합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G<sub>2</sub>의 말에 의하면 G<sub>2</sub>가 맡고 있는 E<sub>1</sub>과 E<sub>w1</sub>의 제사도 장차 장남인 G<sub>1</sub>이 모셔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례 9>의 경우는 장남봉사의 원칙이 매우 강한 집안에서 祭遷의 형식과 복합되어 제사분할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lt;사례 10&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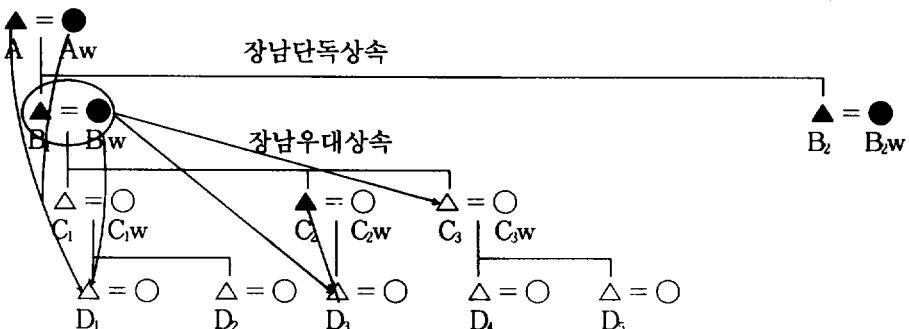
&lt;사례 10: 한림읍 명월리 하동&gt;

<사례 10>은 장남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집안에서 나타나는 제사분할의 사례이다. 이 門中에서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장남우대 혹은 장남단독상속의 형태를 취하면서 제사도 장남이 전담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제사를 분할하는 사례도 가끔 발견되고 있다. <사례 10>의 종손인 C<sub>i</sub>은 부모의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D<sub>1</sub>, D<sub>4</sub>, D<sub>8</sub>도支次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D<sub>1</sub>(D<sub>1</sub>사후에

8) 祭遷이란 종손이 세대가 다하여 기제사를 모실 수 없어집에 따라 지손 중 최고 항렬자에게로 제사를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祭遷을 생략하게 되면 종손의 代盡과 동시에 止祭하게 된다.

는 E<sub>1</sub>)이 직계조상의 제사를 전담하고 D<sub>4</sub>와 D<sub>6</sub>도 부모의 제사를 맡아 봉행했다. 그러나 D<sub>4</sub>와 D<sub>6</sub>는 그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제사도 형제가 분할해서 지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D<sub>4</sub>의 장남 E<sub>4</sub>는 부와 모, 조부의 제사를 담당하고 차남 E<sub>4</sub>는 제모와 조모의 제사를 맡게 되었다. E<sub>6</sub>와 E<sub>7</sub>형제는 先親 D<sub>6</sub>의 제사를 1년씩 돌아가며 ‘돌림제사’로 모시고 있는데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형제가 부모의 제사를 분할할 것이라 한다.

#### 〈사례 11〉



〈사례 11 : 한림읍 명월리 하동〉

〈사례 11〉은 좀 특이한 돌림제사의 경우이다. A의 차남인 B<sub>2</sub>는 어려서 도일하여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고, 장남인 B<sub>1</sub>이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A부부의 제사도 전담하게 되었다. A는 장남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면서 손자들에게도 약간씩 나누어 주었는데 장손자(C<sub>1</sub>)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었다. B<sub>1</sub>도 아들 3형제(C<sub>1</sub>, C<sub>2</sub>, C<sub>3</sub>)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면서 장남을 우대하였다. 그런데 B<sub>1w</sub>는 남편이 사망한 1년후 같은 날 사망하여 부부의 閔尸이 같게 되었다. A부부와 B<sub>1</sub>부부의 제사를 장남인 C<sub>1</sub>이 모두 맡게 되면 그의 제사부담이 너무 크게 된다. 그렇다고 한 날 제사가 드는 B<sub>1</sub>부부의 제사를 분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장남 C<sub>1</sub>이 조부모인 A부부의 제사를 모시기로 하고, 부모의 제사는 제월전없이 아들 3형제(C<sub>1</sub>, C<sub>2</sub>, C<sub>3</sub>)가 1년씩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하였다. 설과 추석의 명절 차례는 장남이 맡아서 봉행하도록 하였다. 장남의 제사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 것은 장남이 상속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배된 제사는 C<sub>1</sub>이 연로하고, C<sub>2</sub>가 사망하여 각기 그의 아들이 계승하였다.

〈사례 9〉 〈사례 10〉 〈사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장남봉사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오다가 최근에 와서 제사를 분할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매우 많은 사례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에서 제사분할의 관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四. 濟州島 祭祀分割의 特徵

제사분할의 관행은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남 진도군(伊藤亞人:1973, 全京秀:1977, 竹田 旦:1984), 경남 통영군(金宅圭:1975, 劉明基:1983), 경북 영덕군(李光奎:1975), 경북 영일군과 달성군(呂重哲:1980), 강원도 인제군(李光奎:1977), 강원도 삼척군 신리(呂重哲:1980) 등지에도 제사분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김택규가 보고한 경남 통영과 이광규의 경북 영덕, 강원도 인제 그리고 여중철의 경북 달성 등에 관한 보고는 제사분할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유명기의 경남 통영군에 대한 보고와 여중철의 경북 영일군에 대한 보고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제사분할의 경위까지 밝히고 있으나 사례수가 2~3사례에 불과하고 제사분할 과정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듯한 흔적이 엿보여서 제사분할이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제사분합이 사회적 관행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곳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주도와 더불어 전남 진도군과 강원도 삼척군 신리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 자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11개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주도 이외 지역의 제사분합과 비교하여 제주도 제사분합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의 제사분합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섬의 서·북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천면 함덕리에서부터 제주시를 거쳐 애월, 한림, 모슬포, 화순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내에서도 마을에 따라 혹은 가문에 따라 장남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사를 분할하는 경

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같은 마을 같은 문중에서도 장남봉사와 제사분할이 혼재되어 있다(李昌基:1991).

둘째, 제주도에는 제사를 분할하고 분할된 제사를 계승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도나 강원도 신리의 경우에는 장남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차남이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남자 조상의 제사는 종손계로 계승되고 여자 조상의 제사는 지손계로 계승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伊藤亞人:1973, 全京秀:1977, 竹田 旦:1984, 呂重哲:1980).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사계승의 방향에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제사부담의 형평을 중시하여 조상의 수와 자손의 수,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등을 감안하여 고르게 제사를 분배한다. 일단 제사가 분배되었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재분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제사분할과 분할된 제사의 계승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李昌基:1991).

세째, 진도나 신리에서는 기제사를 분할하더라도 명절 차례는 종손이 담당하는 데 비해 제주도는 기제사 뿐만아니라 명절의 차례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정 조상의 제사를 몇몇 자손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모시는 ‘돌림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징적이다. 제주도에서 그만큼 제사부담의 형평을 강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네째, 진도나 신리는 장남우대상속을 취하면서 제사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의 제사분할은 재산의 균분상속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래거나 제사분할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문에서는 재산의 균분상속을 바탕으로 제사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장남우대 혹은 장남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면서도 제사를 분할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장남봉사에서 제사분할로 이행되어 오는 과도적 현상 또는 양 제도의 복합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제주도의 제사분할은 근래에 와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남봉사에 충실하던 문중에서 점차 제사분할의 관행을 도입하고 있으며, 장남봉사를 원칙으로 삼던 지역으로 제사분할 관행이 확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인의 합리적 가치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제사부담의 상대적 경감, 거주지 확산에 따른 제사참여의 불편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李昌基:1991, 1992)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축적한 연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金 宅 圭 1975 “韓國의 血緣慣習에 대한 一考察(1)”『東洋文化』16.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一潮閣
- 呂 重 哲 1979 “韓國山間部落에서의 分家와 財產相續”『韓國學報』15.  
1980 “祭祀分割相續에 관한 一考”『人類學研究』1.
- 劉 明 基 1983 “祭祀分割의 意味” 제15회 文化人類學全國大會發表論文.
- 李 光 奎 1975 『韓國家族의 構造分析』一志社.  
1977 “親族集團과 祖上崇拜”『韓國文化人類學』9.
- 李 昌 基 1983 “제주도의 가족관계”『한국의 발견 : 제주도편』뿌리깊은나무사.  
1991 “濟州島의 祭祀分割”『韓國의 社會와 歷史』(崔在錫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一志社.
- 1992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 : 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研究』9, 濟州島研究會.
- 全 京 秀 1977 “珍島 下沙美의 儀禮生活”『人類學論集』3.
- 崔 在 錫 1966 『韓國家族研究』民衆書館.  
1972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관한 研究”『歷史學報』53-54合輯  
1978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構造”『行動科學研究』3.  
1979 『濟州島의 親族組職』一志社.  
1980 “朝鮮時代 家族制度研究의 回顧”『精神文化』8.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 玄 容 駿 1973 “社會”『濟州島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1977 “濟州島の 表祭”『民族學研究』42-3. 日本民族學會.
- 伊藤亞人 1973 “韓國農村社會的一面” 中根千枝編『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東京大出版會.
- 佐藤信行 1973 “濟州島の 家族”『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東京大出版會.
- 竹田 旦 1984 “韓國における祖先祭祀の分割について”『民俗學評論』24.  
(姜龍權 譯 “韓國에 있어서의 祖上祭祀의 分割에 대하여”『石堂論叢』10. 1985. 東亞大學校.)